

서울특별시 공유재산(서울관광 전시·교육센터) 사용료

감면 동의안

검 토 보 고

1. 회부경위

- 가. 의안번호 : 제3725호
- 나. 제 출 자 : 서울특별시장
- 다. 제출일자 : 2026년 5월 26일
- 라. 회부일자 : 2026년 5월 27일

2. 제안이유

- 가. 서울특별시 공유재산인 서울관광 전시·교육센터를 서울특별시 출연기관인 서울관광재단이 무상 사용할 수 있도록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제24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5항 제2의2호에 따라 사용료 면제에 대한 시의회 동의를 얻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공유재산(서울관광 전시·교육센터) 현황
 - 위치: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9길 20(동화약품 본사 2층)
 - 면적: 건물 753.13㎡, 토지 78.46㎡
 - 재산관리관: 관광정책과

나. 공유재산 사용계획

- 사용자(수허가자) : 서울관광재단(출연기관)
- 허가기간 : '26. 6. ~ '31. 6. [5년]
- 예상 감면액 : 17,763천원
- 허가방법 : 수의계약(「공유재산법」 제20조, 동법 「시행령」 제13조)
- 공유재산 주요사용계획(안) : 서울관광 전시·교육센터 운영

시설 구분	활용 계획(안)
대회의실	관광산업 관련 세미나, 포럼 및 관광 전문인력 교육 프로그램 운영
소회의실	관광분야 간담회, 소규모 교육 및 워크숍 등
전시공간	서울 관광정책 및 관광 콘텐츠 홍보 등
기타(사무공간)	센터 운영 및 프로그램 관리 업무 공간

다.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필요성

- 市 출연기관이 비영리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가능
 - 市 출연기관인 서울관광재단이 서울관광 전시·교육센터를 운영하는 사업은 정관에 따른 목적사업(관광 전문인력 양성 및 역량강화)으로 비영리사업에 해당되며,
 - 市 출연기관 비영리사업은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및 시의회 동의 절차 이행할 경우 「공유재산법」 제24조 등에 따른 사용료 감면이 가능함
- 불필요한 세입·세출예산 편성 지양으로 행정·회계 효율성 제고
 - 재단에 공유재산 사용료를 부과(징수)할 경우, 사용료만큼의 市의 세출(출연금)과 세입(사용료)도 함께 증액되는 구조로, 사용료 부과에 따른 행정·회계의 비효율성 방지

※ '26년 제3차 공유재산심의회 심의결과: '의견제시'

- 심 의 일: '26. 5. 7. (목)
- 심의결과: 의견제시
 -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제24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제5항 제2의 2호에 따라 지방의회가 동의해야만 사용료 감면이 가능하므로 시의회 동의 절차를 거쳐 사용료 감면을 추진해야 함.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및 근거

-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제24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5항제2의2호.

나. 예산조치 : 해당없음

다. 합 의 : 해당없음

라. 기 타 : 해당없음

5. 검토의견(수석전문위원 이윤희)

가. 동의안의 개요

- 본 동의안은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에 따라 서울특별시 공유재산인 서울관광 전시·교육센터를 서울관광재단이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료를 면제하기 위하여 서울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되었음.

나. 서울관광 전시·교육센터 개요

- 서서울관광 전시·교육센터(이하 ‘관광교육센터’라 한다)는 서울특별시 중구 순화동 5-1번지 일원 재개발 사업에 따른 기부채납 시설로, 지상 2층, 연면적 753.13㎡임.

< 서울관광 전시·교육센터 시설 현황 >

자산관리관 (운영주체)	시설규모 (연면적, 층수 등)	주요 공간
관광체육국 (서울관광재단 예정)	753.13㎡ 지상2층	· 전시 및 홍보, 네트워킹이 가능한 전시공간(17평) 조성 · 중·소규모 교육이 가능한 50석 규모 대형 교육장(22평) 조성 · 소규모 회의 및 교육이 가능한 소형 교육장(4평) 5개소 조성 · 기타 운영인력 상주공간(10평), 창고(4평)등 조성

-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대상은 중구 순화동 219(동화약품 사옥) 2층 753.13㎡와 건물 지분에 해당하는 토지 지분 78.46㎡임. 허가 기간 및 무상 사용기간은 이번 동의안이 시의회 동의를 완료하는 시점인 2026년 6월 말부터 2031년 6월까지 총 60개월이며, 허가 기간 중 1차년도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용료는 1천8백만원임.

○ 서울관광 전사교육센터 운영을 위한 사용료 감면	
- 목적 및 용도	: 서울관광재단(市출연기관) 비영리 목적사업 수행(전사교육 공간)
- 위치	: 중구 순화동 219
- 사용면적	: <토지> 78.46㎡ / <건물> 753.13㎡
- 당사자	: <허가/계약부서> 관광체육국 관광정책과 / <수허가자/대부계약자> 서울관광재단
- 허가기간	: '26.6. ~ '31.6. [5년] ※ 최초
- 무상사용기간	: '26.6. ~ '31.6. [5년]
- 기준가격	: <토지> 762,553천원 [㎡당 공시지가 9,719천원 × 면적 78.46㎡] <건물> 1,013,713천원 [㎡당 감정평가액 1,346천원 × 면적 753.13㎡]
- 감면액	: 17,763천원/1차년도 [토지·건물 기준가격 × 비율(10/1000)]
- 감면근거	: 「공유재산법」 제24조 제1항,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17조 제5항 「공유재산법」 제24조(사용료의 감면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22조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. 4. 재난을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허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지방의 회가 동의한 경우 「공유재산법 시행령」 제17조(사용료 감면) ⑤ 법 제24조제1항제4호에서 “재난을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허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”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. 2의2.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 또는 공법인의 비영리 사업을 위한 경우

다. 서울관광 전시·교육센터 사용료 감면의 적정성

- 본 동의안은 서울관광재단이 관광교육센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을 허가하고 그에 따른 사용료를 면제하기에 앞서,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임.
-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제24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5항제2의2호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 또는

공법인이 수행하는 비영리 사업으로서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.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 출연기관인 서울관광재단은 이러한 사용료 면제의 법적 요건을 충족하고 있음.

- 또한 서울특별시 출연기관인 서울관광재단은 서울시로부터 사업 전반에 필요한 금액을 출연금으로 교부받고 있으며, 서울시가 관광교육센터 사용료를 부과할 경우 그 금액만큼 세출(출연금)과 세입(사용료)이 동시에 발생함.
- 따라서 사용료를 부과하더라도 서울시 예산상의 이득이 발생하지 않으므로, 사용료 면제를 통해 이와 같은 불필요한 세입·세출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행정·회계의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.